

건설제도 알리미 2017. 01

CAK 대한건설협회

본 자료는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 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국가계약예규 개정 · 시행('16.12.30)

■ 턴키 등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방법 및 절차 신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장 신설)

- 기본설계 심의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 설계점수 60점~85점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에서 결정
-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시공의 난이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격협상 실시
 - 최대(협상 기초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
 - *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 대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안서 보상비를 포함
 - 최소(최소 협상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중심제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 ** 설계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비중,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반영
-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계약 체결
 - 가격협상 결렬시 설계서 사용대가* 지급후 종합심사낙찰제 발주 및 해당업체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여 금지
 - * 일괄입찰 :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 평균낙찰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 평균낙찰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보상제도 개선**(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제87조의2, 제87조의3)

- 설계보상비 예산총액은 유지하되, 우수설계자에 대한 보상 강화
 - 1인당 최대 수령액을 공사비의 1.4%(기술제안입찰 0.7%)까지 확대
 - 설계점수가 일정수준(입찰공고에 명시) 이상인 자만 보상비 지급

	현행	개선
턴키	$0.3\% + \frac{\text{설계점수} - 60}{40} \times 0.6\%$	$2\% \times \frac{\text{설계점수}}{\text{설계비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 1.4% 초과시 1.4% 지급
기술제안	$0.1\% + \frac{\text{제안서 점수} - 60}{40} \times 0.2\%$	$1\% \times \frac{\text{제안서점수}}{\text{제안서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 0.7% 초과시 0.7% 지급

■ **소규모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적격심사기준 별표)

- 50억미만 10억미만공사 시공실적 만점기준 완화(2배 → 1배)
 - ※ 지자체 기준과 동일

■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개선사항**(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1-1, 별표 1-2, 별표 3)

- 사회적책임 고용항목 평가비중 강화(20%~40% → 30%~40%)
 - ※ 공정거래 항목 최소기준 하향(20~40% → 10~40%)
- 시공계획 위반 등에 따른 감점기준 정비
 -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시 일반공사에도 감점적용 신설
 - PQ심사시 가점받은 하도급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하도급점수 0점

■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지체시 간접비 지급대상 제외**(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경우 간접비 지급없이 계약기간 연장

■ 대형공사 등급별 설계가중치 조정(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 고난이도 공사 등 설계비중 강화
 - 기술강조형 : 50 ~ 70% → 50 ~ 80%
 - ※ 500억원 미만 상한도 70%로 상향(종전 60%)
 - 균등평가형 : 45 ~ 55% → 40 ~ 60%
 - 가격강조형 : 30 ~ 50% → 20 ~ 50%

2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 시행(17.1.1)

- 발주기관 귀책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추가비용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 조정근거 마련(동 지침 제64조제9항 신설)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 현장 유지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가능
 - ※ 계약당사자간 책임 혼재로 책임한계 불명확한 경우 추가비용 균분부담

협의 · 조정 신청기준

- ①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 신청에 한함
 - ②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시 공기연장 책임소재 · 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
-
- 조기준공 공사현장의 직·간접 비용 감액정산 의무화(동 지침 제64조제10항 신설)
 - 조기 준공시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 등 정산해야 함

【시행일 : '17.1.1부터 시행】

- 공기연장 비용 관련규정(제64조제9항)은 '17년 1월 이후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한 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 실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현실화가 필요한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와 사전협의 필요

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시행('17.1.13)

- 수급사업자의 건설공사 시공 · 관리 의무 강화(제4조)

- 계약체결 후 원사업자에게 시공 관련 제출 서류* 확대

* 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안전 · 환경 ·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등

<조항 설명>

- 수급사업자의 안전 · 품질 시공 등을 위해 공사 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수급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규정 강화(제14조)

- 감독원(원사업자 대리인)에게 하도급 관리 등 직무* 추가

*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위반 관리 업무, 현장 안전관리 업무 의무

- 현장대리인(수급사업자 대리인)에 대하여 하도급관리 책무* 신설

* 감독원의 감독행위에 수급사업자가 응하도록 의무화

<조항 설명>

-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위반으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의 피해 방지를 감독하고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원(원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 감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조사, 자료 제출시 수급사업자가 조사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 관리를 강화

● **미지급 임금 등 원사업자가 직접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제38조)**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대금 체불시 원사업자는 차기 기성금 지급시 임금 등을 보류하고 직접 지급 가능

<조항 설명>

- 수급사업자가 2차 협력자에 대한 대금 체불시 원사업자가 직접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계약이행보증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대위변제’를 예방

●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손실보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제48조)**

-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후속 계약 체결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약정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손실보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

<조항 설명>

-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 동안 보증기관(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여 원사업자가 청구하지 못한 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 지체상금, 공사현장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간접비, 채무자가 미지급한 비용, 채무자 부도로 인해 미발행된 하자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 범위를 원·수급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약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 규정 명확화**

- 천재지변 등 공기연장시 추가 공사대금 협의 및 조정(제13조)
- 안전관리비 지급과 사용 감독(제20조) 및 보험료 지급·정산(제21조)

<조항 설명>

- 건산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시되는 보험료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하고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지급토록 하여 기존 규정을 명확화하고 원사업자가 사용내역을 감독토록 함

- 대금조정(제30조), 감액금지(제31조), 부당반품(제35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 금지사항 계약서에 명시

— <조항 설명> —

-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금지사항에 대한 일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

- 기타 등 수급사업자와의 공정거래 관련

-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청구(제30조)
- 수급사업자에 특정 보증기관 지정 강요 금지(제48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제51조) 등

— <조항 설명> —

-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 저가 하도급에 따른 대금 조정을 수급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원·수급사업자가 협의·결정
-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을 보전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입찰내역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고 수급사업자도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
-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명시하고
 - 건설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 준용

4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시행[17.1.16]

- 기술개발투자비 평가기준 완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2-1)
 - (PQ) 최고·최저등급격차(4점→2점), 등급간 점수격차 완화(1점→0.5점)
 - ※ 만점기준은 150% 유지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시행일 : '17.1.1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5 |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 시행(17.1.20)

- 투찰률이 88% 초과인 경우 균형가격산정에서 제외(동 기준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 (현행) 투찰률 상한규정 없음

→ (개정)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보다 높은 경우 제외

※ 모든 입찰금액이 제외되는 경우 균형가격은 예가의 100분의 88로 정함

- 고용평가 비중 강화(동 기준 별표 1-1, 1-2)

- 건설인력고용 배점상향(0.2점→0.3점), 공정거래 배점하향(0.2점→0.1점)

심사항목		현행	개정안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2점	0.3점
	건설안전	0.2점	0.2점
	공정거래	0.2점	0.1점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0.4점

※ 기재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 현장대리인 평가방법 개선(동 기준 별표 2-5.배치기술자 심사)

- 현장대리인에 한하여 최소인정기준 설정

· 고난이도 공사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최소인정규모 차등

구분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제외) 기준
고난이도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일반공사	1등급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2등급 공사	50억원 이상 공사
	3등급 이하 공사	30억원 이상 공사
	조경 공사	10억원 이상 공사

- 복합공사 부대공종 경력 인정

· 심사대상 업종과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업종(부대공종포함)이 일치하는 경우 부대공종 현장대리인 경력도 인정

- **입찰자 10개사 미만인 고난이도공사의 입찰단가 평가방법**
(동 기준 제14조제7항 신설)
 - (현행) 조사내역서단가×50% ≤ 입찰단가 ≤ 조사내역서단가×150%
 - (개정) 조사내역서단가×예가산출율×50% ≤ 입찰단가 ≤ 조사내역서단가×예가산출율×150%
 - ※ 입찰단가가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낙찰 배제

- **물량·시공계획심사 대상공사 범위 조정**(동 기준 제10조제1항 제2호 단서 신설)
 - (현행) 고난이도공사는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실시
 - (개정) 실적제한 고난이도공사 중 물량수정허용공종을 선정키 곤란한 공사는 물량·시공계획심사 생략하고 단가심사 실시

-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동 기준 별표 2-12.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시 해당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

【시행일 : '17.1.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